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면서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규정함(안 제8조).
-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과 탄소예산 분석·예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2제2항).
- 녹색국채 및 녹색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의3, 제68조의4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채권 발행 지원에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제68조의2,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II. 검토 의견

안 제2조제8호의2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의규정을 신설(종전에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려는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값을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면서, 이 규정 및 이하에서 그 배출량은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규정함.¹⁾

이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게 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²⁾

다만, 현행법에 이미 “배출량”과 “순배출량”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³⁾하고, 제2조 이하에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용규정이 없음을 고려, 해석의 오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이하 같다”는 법문을 삭제하고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수정하였음.

또한, 종전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⁴⁾는 안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이를 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8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1) 배출량은 배출원이면서 동시에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 포함여부에 따라, “총배출량”은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를, “순배출량”은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를 의미함.

2)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설정시 교토의정서(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를 총배출량으로 규정)와 주요국 사례를 고려하여 배출량 기준을 기준연도(2018년)는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2030년)는 순배출량으로 상이하게 설정하였음.

3)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 제36조, 제44조, 제50조, 제55조, 제66조, 제83조 / “순배출량”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제9조제2항·제3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 ⑦ (생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② ~ ⑫ (생략)

규정하게 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근거조항을 “제8조제1항”으로 인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⁵⁾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반영하였음.⁶⁾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u>배출량(순배출량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u>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부 칙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8. (개정안과 같음)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u>순배출량</u>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부 칙 <u>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조제3호 중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u>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 7. (생략)

6) 참고로, 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까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8조제2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부위에서 심사중인바 제58조제2항의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후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의 삭제(통합·조정) 또는 제58조제2항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을 추가하는 등 정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III.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

안 제36조의2제2항⁷⁾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부속기관)인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인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부속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 업무는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⁸⁾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부속기관인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생략)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된 값을 말한다) 분석

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예측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